

보도자료

2011년 11월 11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 미디어기반정책과	김용일과장(1360)	나.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과장(2430)
다. 방송채널정책과	오광혁과장(2470)	라. 정책총괄과	전성배과장(2110)
마. 통신경쟁정책과	이창희과장(2530)	바. 전파정책기획과	박노익과장(2210)
사. 전파방송관리과	송경희과장(2250)	아.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과장(2350)
자.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과장(2350)		

[보고안건]

가. 통신이용제도과	최성호과장(2550)
------------	-------------

2011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9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 시청점유율 규제(방송법 제69조의 2)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 추진에 앞서,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사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2010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건

- 2010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역방송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과 재허가 권고사항 이행실적에 따른 조치방안을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함

- KBS는 자체적으로 계획한 전체 매출 대비 지역제작비 비율을 준수하되, 최소 지역제작비 비율을 3%로 하고, 지역MBC와 지역

민방은 자체적으로 계획한 매출 대비 제작비 비율을 준수하되, 최소 제작비 비율을 지역MBC 10%, 지역민방 14%로 함

- 2010년 지상파방송사의 배당 관련 권고사항 이행실적 평가결과, 배당성향이 과도한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G1(舊강원민방), 제주방송에 대해 엄중 경고
- 향후 배당실적 및 제작비 투자 등 방송사업 투자실적 등을 재허가, 방송평가,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등에 반영할 수 있음

다. 2012년도 공익채널 선정(안)에 관한 건

- 방송법 제7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 2012년도 공익채널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기로 의결함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명
사회 복지	복지TV, 육아방송(Korea Childcare Broadcasting), 일자리방송(JBS)
과학·문화 진흥	아리랑TV, 사이언스TV(SCIENCE TV), 예술티비 아르떼(예술TV Arte)
교육 지원	EBS플러스1수능전문, EBS플러스2중학/직업, EBS English

※ 총 16개 채널이 2012년도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함

- 금번에 선정된 공익채널의 유효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함

라. 방송통신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수립·공고해야 하는 법정계획인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 제2기 위원회 정책 방향 및 20대 세부과제에 따라 향후 3년간 추진할 100대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 및 소요예산을 구체화하여 의결함
- ①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②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③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④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 보호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송통신 선진국을 실현하고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실현

마.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 o (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함
- 허가심사는 주과수할당 공고기간(1개월:10.19~11.18) 중 허가신청을 한 모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허가심사를 추진
- 심사위원은 20여개 주요 단체, 학회 등으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
- 심사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개 심사사항 및 세부 심사항목(총 20개)을 평가
- 허가심사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되,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최대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

바.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o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신설·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 마련 등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과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개선을 통한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 확립 및 현행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사.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활용도가 낮은 음악유선방송용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채널용도를 복수로 허용하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음악유선방송용으로 지정된 채널의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증가로 채널이 부족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음악유선방송용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채널의 용도를 변경

현 행	개 정(안)
○ 주파수대역 : 88MHz~108MHz	○ 주파수대역 : 88MHz~108MHz
○ 용도 : 음악방송대역	○ 용도 : 음악방송대역 또는 <u>종합유선방송대역</u>

아.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한-미 FTA 합의사항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여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완화하여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제57조제4항)
- 개정안은 한-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부칙)

자.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한-미 FTA 합의사항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여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및 SO·위성·PP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완화하여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을 제고토록 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제8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제3조제2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현행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0으로 완화(제3조제3항)
- 개정안은 한-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부칙)

[보고안전]

가.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첨부3 및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이통사 중심의 유통망 구조를 개선하고, 단말기 선택권 확대 및 통신요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IMEI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첨부 1 >

20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

□ 주요 내용

가. 시청점유율 조사 및 모니터링 방안

- (기초조사) 전국 16개 시도 25,6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및 TV 시청환경을 조사
 - (패널가구) '10년 3,000가구, '11년 3,250가구에서 '12년 3,500가구 이상으로 확대 (향후 4,000가구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확대)
 - (조사지역) 전국 16개 시도
 - (조사채널) 지상파, SO, 위성 및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 전체
 - (조사기간) '12. 1. 1 ~ 12. 31
 - (조사 모니터링) 시청점유율 조사수행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수행
 - (이동매체 사전조사) 이동매체(DMB)에 대한 정규조사에 앞서, 조사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점검 등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
- ※ 별도 연구과제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조사방법 개발

나. 시청점유율 조사기관 선정 방안

- (선정절차)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을 적용하여 선정
- (심사기준) 평가항목은 '11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조사기관의 조사 수행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배점비중을 일부 조정

※ '시청점유율 안정성 유지' 평가항목 배점 확대(5%→10%), '방송환경 변화 대응계획' 평가항목 배점 축소(10%→5%)

< '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기관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안) >

대항목	배점비중	세부항목
1. 사업수행 능력	15%	1-1 회사규모, 조직구조, 사업범위 등 실행역량(5%) 1-2 향후 투자 및 실현 계획(5%) 1-3 재무구조의 안정성(5%) _ 계량
2. 조사대상의 대표성 및 적정성	35%	2-1 기초조사 설계 및 운영 계획(10%) 2-2 패널가구 확대 및 지역할당 계획(10%) 2-3 패널가구 구성 및 관리 계획(15%)
3.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35%	3-1 패널 신뢰도 제고 및 운영 계획(10%) 3-2 시청점유율 안정성 유지(10%) 3-3 자체 검증 및 검수 대응 이행 계획(10%) 3-4 관리기록 유지 및 문서화 계획(5%)
4. 조사결과 제공계획 및 방송산업 발전 기여 방안	15%	4-1 조사결과 제공 계획(5%) 4-2 전담인력배치 및 관련 산업 고객 서비스 계획(5%) 4-3 방송환경 변화 대응 계획(5%)
4개 대항목	100%	13개 세부항목

- (평점방법) 비계량 항목은 5등급 척도로 평가하여 평점을 부여하되, 변별력 제고를 위해 등급 간 간격을 '11년에 비해 확대(10%p→20%p)
- (심사위원회) 방송, 통계, 법률, 경영회계 및 기타(조사방법론 전문가) 등 5개 분야 7인 및 심사위원장 1인(총 8인)으로 구성·운영
 -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2인과 미디어다양성 위원 4인 등 총 6인으로 '인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향후 추진 계획

- '11. 11월 :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공고
- '11. 12월 : 심사위원회 운영 및 '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기관 선정
- '12. 1월 : '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첨부 2 >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

□ 추진배경

- (주)한국모바일인터넷이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11.8.26)함에 따라, 신규허가 심사를 추진

<허가신청법인 현황>

법인명	신청역무	사업권역	대표자	비 고
(주)한국모바일인터넷	기간통신역무 (휴대인터넷:WiBro)	전 국	방석현	설립예정법인

□ 주요경과

- '11. 08. 26 (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 '11. 10. 19 휴대인터넷(WiBro) 주파수 할당 공고(공고기간:10.19~11.18)
- '11. 10. 24 (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허가신청 적격 통보

□ 허가심사 관련 주요 결정사항

- (주파수할당과의 선후관계) 허가심사 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할당 절차를 진행

※ 주파수할당 절차를 먼저 진행할 경우, 주파수 할당을 받은 법인이 허가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혼란 발생 가능

- (복수 사업자 동시심사) 주파수할당 공고기간(1개월:10.19~11.18) 중 허가신청을 한 모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허가심사를 추진

※ 주파수할당 신청기간 중 추가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심사 전에 별도로 해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 (허가대상 사업자수) 다수의 법인이 허가를 신청하고 신청 법인간 경합시,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최대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

※ 관련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방통위고시) 제13조제5항

□ 허가심사 절차 및 심사기준

- (심사위원 구성) 20여개 주요 단체, 학회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
- (심사기준) 기간통신업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제공업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개 심사사항 및 세부 심사항목(총 20개)을 평가(계량/비계량 평가)
- ※ 심사 및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주요주주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청문)를 진행

< 심사사항 및 세부 심사항목 >

심사 사항	세부 심사항목
기간통신업무 제공 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 (50점)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 ·망고도화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우수성 ·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이용자보호 계획 및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등
재정적 능력 (25점)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재무구조(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 ·자금조달계획과 역무제공계획 등과의 일관성 및 부합성
제공업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25점)	·제공 업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타 통신망과 상호접속,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의 우수성 등

- (허가대상법인 선정) 심사결과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

<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 >

- ① 허가신청 적격여부 결정에서 적격으로 판정
 - ②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 ③ 복수의 허가신청 법인간 경합이 있는 경우 총점의 최고득점을 획득한 법인
- ※ 허가대상법인은 선정기준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

□ 향후 일정(안)

- '11. 11월말 ~ 12월초: 허가심사 및 허가대상법인 선정(위원회 의결)

※ 주파수할당 공고기간 중 추가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한 허가 신청 적격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심사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첨부 3 >

IMEI 제도개선 계획

□ IMEI 제도개선 계획

- 이통사, MVNO, 제조사(국내외),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개방형 IMEI 제도 도입)**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 IMEI를 별도로 관리하여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 제도 도입
 - 개방형 IMEI 제도가 시행되도록 이통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 ※ SKT, KT 12.4월까지 개발 예정, LGU+는 2G 사업자로 제외
 - 이통사가 판매한 단말기 IMEI를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로 하되, 타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의 IMEI도 이용자 희망시 이통사가 관리
- **(IMEI 표기 개선)** 이용자가 IMEI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에 표기하고 단말기 화면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
 - ※ 국내 제조사는 IMEI를 단말기에 표기하지 않아 이용자가 IMEI를 알 수 없음
- **(IMEI 통합관리센터 구축)**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의 IMEI 정보를 이통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IMEI 통합관리센터 구축
- **(요금제 출시)** 단말기 구입방식에 제약 없이 요금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 유도
- **(MMS 규격 표준화)** 스마트폰은 단말기를 변경해도 MMS*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이통사 MMS 규격을 국제표준으로 단일화

※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

- (제도개선 내용 홍보) 이통사, 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련 부처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언론 홍보 및 홍보책자 제작·배포

□ 개선 효과

- (단말기 유통망 다변화)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 유통업체, 온라인 판매점, 편의점 등으로 유통망이 다변화
 - 다양한 단말기 유통주체의 등장은 경쟁유발을 통한 단말기 가격인하 및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 유통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
- (통신요금 부담 완화) 이통사의 단말기 통제력 약화는 단말기 보다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유발하여 요금인하를 촉진
 - 재고 단말기나 중고폰에 의존하던 MVNO 사업자의 단말기 수급 애로가 해소되어 MVNO 사업이 활성화
- (단말기 선택권 확대) 이통사와 계약된 단말기만 유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조사 직영점, 해외 단말기의 수입 유통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 향후 추진일정

- 이통사 시스템 개발 및 통합관리센터 구축(~12.4월)
- 개방형 IMEI 제도 시행(12.5월~)